

# 고 발 장

## I. 고 발 인

### 1. 참여연대 (담당 : 공익법센터)

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723-5300

###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 3.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전화 774-4551

## 위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김선희, 강태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서초동, 일신빌딩)

전화 2038-3620, 팩스 2038-3621

### 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201호 (서초동, 한승아스트라2차빌딩)

전화 3288-2100 / Fax. 6455-2100

### 3. 변호사 서채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대덕빌딩) 2층 변호사 서채완 법률사무소

전화 522-7283 팩스 522-7285

## II. 피고발인

### [청와대]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국방부, 舊국군기무사령부]

2.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3.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4. 성명불상, 舊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  
[2014.6.10.~2014.7.22. 위 보직에 있던 자]
5. 성명불상, 舊 국군기무사령부 210부대장  
[2014.6.10.~2014.7.22. 위 보직에 있던 자]
6. 성명불상, 舊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운용과장  
[2014.6.10.~2014.7.22. 위 보직에 있던 자]
7. 성명불상, 舊 국군기무사령부 210부대 강화반장  
[기동탐방기 시험운용 당시 불법 감청 실행자]
8. 성명불상들, 舊 국군기무사령부 210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기동탐방기 시험운용 당시 불법 감청 실행자]

### [검찰]

9. 김진태, 전 검찰총장
10.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11. 엄희준, 검사 (전 대검찰청 검사, 현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12. 최재경, 전 인천지방검찰청장
13. 김희중, 전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14. 주영환, 검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현 대검찰청  
대변인)

### [舊미래부, 전파관리소]

15.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16. 이정구, 전 중앙전파관리소장

17. 성명불상, 전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장

[2014.6.10.~2014.7.22. 위 보직에 있던 자]

18. 이성봉, 전 서울전파관리소장

19. 성명불상, 전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1과장

[2014.6.10.~2014.7.22. 위 보직에 있던 자]

20. 성명불상, 미래부 전파관리소 소속 직원들

### Ⅲ.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피고발인9 내지 14에 대하여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더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 Ⅳ. 범죄사실

####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의 허가없이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 등에서 舊국군기무사령부 기동 방탐장비 또는 전과관리소 전과감시설비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실시간 통신내용 등 약 22,000건을 청취 및 녹음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의 대화를 청취 내지 녹음하였다.

## 2. 직무유기의 점

피고발인9 내지 14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이를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범죄행위를 하려는 다른 공무원의 행위를 저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7. 대검차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으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령상 직무를 벗어나 당시 인천지검이 수사중이었던 유병언 검거를 위해 법원(또는 군사법원)의 허가없이 미래부 전과관리소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불법 감청한다는 계획을 전달받아 국군기무사령부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고,

2014. 6.부터 2014. 7.까지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감청에 협력하고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 V. 고발이유

###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발인들은 시민사회단체들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舊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 및 舊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가 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불법 감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1은 2013. 8. 5.부터 2015. 2. 22.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피고발인2는 2010. 12. 4.부터 2014. 6. 29.까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피고발인3은 2014. 6. 30.부터 2017. 7. 13.까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한 자들로서, 기무사가 대간첩업무에 쓰이는 기동방탐장비 및 전파관리소 설비를 이용하여 불법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다.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이하 ‘범행기간’) 피고발인4는 기무사 제3처장, 피고발인5는 기무사 210부대장, 피고발인6은 기무사 보안운용과장의 각 보직을 수행한 자들이고, 피고발인7은 기무사 보안운용과 소속 군인으로, 이들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민간인 불법 감청 방안을 제안하고, 기무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대간첩 기동방탐장비를 이용해 민간인 불법 감청을 실행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라. 피고발인8 내지 피고발인11은 2014. 6. 13.부터 2014. 6. 14.까지 양일간 시행된 기동방탐기 시험운용작전에 참가한 기무사 210부대 소속 군인들로, 2014. 6. 13.부터 2014. 6. 14.까지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기동방탐기 1식을 이용하여 국제 위키토키 인가대역(138~174 MHz, 216~223 MHz, 403~470 MHz) 내 주파수를 탐색하고 경찰·택시TRS망 등 20개 통신 신호를 감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마. 피고발인12는 2013. 12. 2.부터 2015. 12. 1.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 피고발인13은 2013. 12. 4.부터 2015. 2. 6.까지 대검찰청(이하 ‘대검’) 차장검사으로 재직 한 자이며, 피고발인14 및 피고발인15는 2014. 6. 18. 대검 수사지휘과

소속으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을 전과관리소에 발송한 담당자들로서, 전과관리소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불법감청을 실행토록 제안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바. 피고발인16은 2013. 12. 24.부터 2014. 7. 24.까지 인천지방검찰청장으로, 피고발인17은 범행기간 동안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이자 유병언 일가 비리 특별수사팀장으로, 피고발인18은 범행기간 동안 인천지검 외사부장이자 유병언 일가 검거팀장으로 재직한 자들로서,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일가 관련 수사를 담당하며 민간인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사. 피고발인19는 2013. 4. 17.부터 2014. 7. 15.까지 대한민국 미래부 장관으로, 피고발인20은 2012. 12. 10.부터 2014. 8. 26.까지 중앙전과관리소장으로, 피고발인21은 범행기간 동안 중앙전과관리소 전과관리과장으로, 피고발인22는 2014. 2.부터 2014. 8.까지 서울전과관리소장으로, 피고발인23은 범행기간 동안 서울전과관리소 전과업무1과장으로 각 재직한 자들로서, 기무사 및 검찰의 요청을 받아 전과관리소 설비 및 CS기동팀을 운용하여 민간인 불법 감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입니다.

아. 피고발인24는 범행기간 동안 기무사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들로서 기동방탐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불법감청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자들이며, 피고발인25는 범행기간 동안 전과관리소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전과관리소 설비 및 CS기동팀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불법감청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자들입니다.

## 2. 배경사실

## 가. 기무사·전파관리소의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 보도

방송국 JTBC의 TV프로그램 ‘뉴스룸’은 2019. 4. 8.부터 2019. 4. 9.까지 이틀에 걸쳐 <세월호 직후, 민간인 불법감청...영화관·식당 등 무차별 도청>(참고자료1), <'전파관리소'까지 불법도청 동원 시도...검찰도 협의 정황>(참고자료2), <당시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전국적 도청' 가능>(참고자료3), <대검 "실시간 무선 통신내역 확인 요청" 수상한 공문>(참고자료4), <검찰총장 명의 '무선 통신 내용 협조' 공문...법적 문제는?>(참고자료5)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기사들에는 <작전통신보안활동 일일보고(7.2. 12:00 기준)>, <검찰, 유병언 검거에 미래부 전파측정팀 활용 검토 긴급>(참고자료6),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금수원 내 무전기 주파수 확인에 따른 대응방향>(참고자료7), <기무사, 유병언父子 검거활동에 주력>(참고자료8), <210부대, 기동방탐기 시험운용 결과>, <방탐장비 투입 건> 등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들 및 검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협조(간이무선국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 등) 의뢰>(참고자료9) 문건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나. 의혹이 있는 부분

위 JTBC 보도 및 기사에 제시된 문건들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4. 6. 10.

참고자료6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전파측정팀 활용 시 금수원 무선통신망 전파감시로 유병언 및 측근들의 단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검찰에 제언하였습니다(작성자 : 기무사 보안과 김도연 상사).

○ 2014. 6. 13. ~ 2014. 6. 14.

참고자료2 <210부대, 기동방탐기 시험운용 결과>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 210부대 소속 강화반장 등이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이틀에 걸쳐 기동탐방기 1식을 시험운용했습니다. 이때 탐색 주파수는 국제 위키토키 인가 대역인 138~174 MHz, 216~223 MHz, 403~470 MHz였으며, 경찰·택시TRS망 및 아마추어 무선램 등 20개가량의 신호(경찰3, 공항4, 택시3, 아마추어6, 디지털4)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날로그 신호 16개 주파수 수집·감청 결과, 경찰(순찰차량용)·택시TRS망 및 아마추어 무선램 통신 다수가 식별되었고, 신호 출현 내용이 근무자용 PC화면에 전시되었으며(위터-폴 방식), 검문검색 및 택시 영업 등 업무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지득하였습니다.

○ 2014. 6. 13. ~ 2014. 6. 17. 사이 불상일자

참고자료7에 따르면, 기무사 210부대는 기동탐방장비 이용하여 금수원 내 무전기 주파수 2개(444 MHz, 423 MHz)를 확인하고 감청하였습니다. 444 MHz 대역은 금수원 무전기 10대 중 사용되고 있는 5대를 감청하였고, 423 MHz 대역은 금수원 무전기 10대 중 사용되고 있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기무사는 ‘대응방향’으로 “금수원 무전기 사용실태/미래부 주파수 관리정보”를 “BH보고 및 검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4. 6. 15. ~ 2014. 6. 19.

참고자료8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하여 금수원 내 무전기 주파수 2개(444 MHz, 423 MHz)를 확인하고, 이를 감청하여 2014. 6. 15.부터 2014. 6. 19.까지 통화내용 총 71건(일일 14건)을 수집하였습니다. 위 감청을 통해 근무교대, 경찰 검문동향, 내부 도난사건 발생 등 통화내용을 지득하였습니다.



○ 2014. 6. 17.

참고자료2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유병언 수사와 관련하여 기동 방탐활동을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정원 법에서 위임된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활동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위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전파환경조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계획·결과유지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탐장비 내 감정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채득자료는 사령부에 1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임무종료시 파괴하기로 보안대책을 세웠습니다.

참고자료8에 따르면, 기무사 3처장은 대검찰청 차장에게 “미래부 전파감시소 활용,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 2014. 6. 18.

참고자료9에 따르면, 대검 수사지휘과 검찰주사보 황윤성이 기안한 공문을 엄희준 검사가 결재해 검찰총장 명의로 수사협조공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문은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업무1과장에게 발송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수사협조(간이무선국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 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유병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이무선국(무전기) 상호간의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사업자번호: 125-89-06399, 대표 이용화)
2. 대상지: 경기 안성 보개면 상삼리 소재 일명 '금수원' 및 그 부근
3. 내용: '금수원'에서 사용하는 간이무선국(무전기) 상호간의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4. 기간: 2014. 6. 18. ~ 피의자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 끝.

○ 2014. 6. 19.

참고자료8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해 금수원 내 무전기를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2014. 6. 17. 검찰에 제공한 “미래부 전파감시소 활용,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시행되었습니다.

○ 2014. 7. 2.

참고자료1 <작전통신보안활동 일일보고(7.2. 12:00 기준)>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가 2014. 6. 10.경부터 2014. 7. 2. 12:00까지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에서 279개 채널을 통해 수집한 통신내역은 5,220건(누적)에 이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총 포착건수 (누계/포착)	채널 수
①서울 ○○산	475(121)	20
②하남 ○○산	398(115)	76
③성남 ○○산	698(135)	12
④용인 ○○산	925(+150)	35
⑤안성 ○○○		
⑥대구 ○○산	416(113)	56
⑦순천 ○○산	1,367(93)	55
⑧부산 ○○산	941(254)	25

○ 2014. 7. 2. ~ 2014. 7. 4.

참고자료1에 따르면, 기무사·전파관리소는 민간인의 통신에 대하여 불법 감청을 실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시	장소	대상	특이사항	주파수(MHz)
2014. 7. 2. 07:38	순천	소방서	신고자 휴대전화 번호 노출	154.5250
2014. 7. 2. 09:09	순천	병원(추정)	환자 이름, 증상, 수술계획 노출	423.6875

2014. 7. 3. 20:02	부산	영화관		
2014. 7. 3. 19:22	부산	식당		
2014. 7. 3. 20:14	용인	놀이터	아이 이름 노출	448.750
2014. 7. 4. 04:54	성남	택시		154.5250

○ 참고자료3에 따르면, 기무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령상 어떠한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통신내용 약 22,000건을 불법으로 감청하였습니다.

###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 가. 기무사의 불법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6조는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면서 허가절차 및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군 검사 포함)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병언 검거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감청허가청구를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①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그 직무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군조직으로 세월호 참사사건에 관한 수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②당연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활동과 관련해서 검사가 법원에 감청허가를 청구한 바도 없으므로 기무사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합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①유병언 검거는 범죄수사에 해당하므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고, ②기무사의 감청과 관련해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도 당연히 없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기무사의 감청은 적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대간첩작전 또는 계획된 군 작전훈련에 한하여 활용되는 방탐장비를 민간범죄 수사에 투입하였고, 기무사 210부대 소속 군인들은 2014. 6. 13.부터 2014. 6. 14.까지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기동방탐기 1대를 이용하여 국제 위키토키 인가대역(138~174 MHz, 216~223 MHz, 403~470 MHz) 내 주파수를 탐색하고 경찰·택시TRS망 등 20개 통신 신호를 감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2]

위 불법감청일인 2014. 6. 13.부터 유병언 시신이 확인돼 검거작전이 종료된 2014. 7. 22.까지 성명불상의 기무사 소속 군인(또는 군무원들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감청은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 등에서

22,000건에 이릅니다. [참고자료3]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이며, 기무사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예외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로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49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제2항1)에서 전파감시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전파감시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의 품질 관리 및 혼신 방지, 허가받지 않은 전파의 탐지 등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전파에 포함된 타인의 대화 내용을 전파관리 이외

---

1) **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 목적으로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으며, 특히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전파감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전파관리소는 2014. 6. 18. 검찰로부터 간이무선국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 등 수사협조 의뢰를 받은 뒤, 이에 협조하여 성명불상의 전파관리소 소속 직원들을 참여시켜 2014. 6. 18.부터 2014. 7. 22.까지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 등에서 불법감청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참고자료3]

전파관리소가 기무사 및 검찰의 요청을 받아 민간인을 상대로 감청을 실행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sup>2)</sup>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수사를 통해 전파관리소 직원들의 가담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다. 공동정범의 성립

위 가.항에서 살펴본 기무사의 불법감청 실행자들 외에 기무사 지휘계통에 있는 피고발인4 내지 피고발인7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민간인 불법 감청 방안을 제안하고, 기무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대간첩 기동방탐장비를 이용해 민간인 불법 감청을 실행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최문기 전 미래부장관 등은 기무사 및 전파관리소가 대간첩업무에 쓰이는 기동방 탐장비 및 전파관리소 CS기동팀 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은 본건 범행 당시 유병언 일가 수사를 기무사로부터 전 파관리소를 활용한 감청방안을 제안 받은 뒤 전파관리소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위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본 사안에서 불법 감청의 목적은 유병언 검거를 위한 것이었는데, ①검찰이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담당 수사기관이었고 ②검찰총장 명의로 직접 전파관리소에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본건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대검찰청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항에서 살펴본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7, 피고발인 12 내지 피고 발인19는 직접 불법감청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 라. 소결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 등에서 기무사 기동방탐기 및 전파관리소 전파감시 설비를 이용하여 민간인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실시간 통신내용 약 22,000건을 청취 및 녹음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철저히 수사 해주기 바랍니다.

#### 4.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①행위주체가 공무원이고, ②직무는 구체적 직무로서 직무집행의무가 있는 직무여야 하며, ③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야 하고, ④위법성과 ⑤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모두 본건 범행기간 당시 검사로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사해야 했으나 오히려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편승했고, 전파관리소를 통해 불법감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 6. 17. 은 기무사 제3처장으로부터 “미래부 전파감시소 활용,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을 전달받았을 때에, 피고발인12는 이를 보고받았을 때에, 피고발인14 내지 피고발인15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전파관리소에 발송하도록 지시받았을 때에, 피고인16 내지 피고발인18은 위 감청 자료를 유병언 수사에 활용하도록 전달받았을 때에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사할 구체적 직무집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무특성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엄격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으므로, “금수원 및 그 부근”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2014. 6. 18.~피의자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라는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한 것은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수사하여 시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무시한 채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불법감청을 타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실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함은 물론이고, 단순히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①“유병언이 땅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전과간섭 업무를 담당하는 전과관리소를 통해 지하에서 발신되는 무선기 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②“대화내용이 아니라 무전기 신호의 존재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③“유병언 검거 목적에만 사용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9에 따르면 ①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무전기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으로 신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요청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②수사협조 공문 어디에서도 지하발신 신호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③유병언 검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감청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수사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들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 검찰장 및 이 서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7. 기무사 제3처장으로부터 전과관리소를 활용하여 민간인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불법 감청한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뒤 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주기 바랍니다.

## VI. 결론

본 사안에서 의심되는 불법 감청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졌습니다.

이는 특정기관 또는 몇몇 개인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여러 국가기관이 합작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로, 헌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범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검찰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피고발인들의 혐의와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죄가 있는 자들을 엄벌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1 JTBC, <세월호 직후, 민간인 불법감청...영화관식당 등 무차별 도청>
1. 참고자료2 JTBC, <'전파관리소까지 불법도청 동원 시도...검찰도 혐의 정황>
1. 참고자료3 JTBC, <당시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했다면...'전국적 도청' 가능>
1. 참고자료4 JTBC, <대검 "실시간 무선 통신내역 확인 요청" 수상한 공문>
1. 참고자료5 JTBC, <검찰총장 명의 '무선 통신내용 협조' 공문...법적 문제는?>
1. 참고자료6 기무사 문건 <검찰, 유병언 검거에 미래부 전파측정팀 활용 검토 긴 요>
1. 참고자료7 기무사 문건 <금수원 내 무전기 주파수 확인에 따른 대응방향>
1. 참고자료8 기무사 문건 <기무사, 유병언父子 검거활동에 주력>
1. 참고자료9 검찰 공문 <수사협조(간이무선국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 등) 의뢰>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참고자료                  | 각 1부 |
| 2. 고발대리인 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 1부   |

2019. 4. 15.

고발인들의 대리인

1. 범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2. 범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3. 변호사 서채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